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05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05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현 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 개 정: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정할 때 그 기한은

년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함.

○ 현행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

○ **우리구**의 기금은 현재 약 319,869천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 몇 년간 노인회 활성화, 노인복지증진 사업(경로당 토지매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이 불가피함.

○ 시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복지 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법적 저촉 사항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05

제출연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

5) 입법예고 : 2026. 7. 9. ~ 7. 29.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7호, 2026. 6. 2.,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 ·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